영업비밀 침해 사례분석을 통한 제도적 보호체계 연구

국내교육훈련과정

고호승

《 목 차 》

제1장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영업비밀의 기본요소 ····· 2
가. 비공지성 ····· 3
나. 비밀관리성 ····· 4
다. 경제성 ····· 5
3. 우리나라의 영업비밀보호 법률 체계 ····· 7
가. 부정경쟁방지법및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 7
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 관한 법률 ····· 8
제2장 우리나라의 영업비밀침해 사례 및 분석 ····· 9
1. 대우자동차 사건 ····· 9
2. A통신회사 광다중화장치 유출 사건 ····· 11
3. 그 밖의 영업비밀침해 사례 ····· 13
4. 침해범죄 분석 ····· 15
가. 기술유출의 국외 비중이 높아짐 ····· 15
나. 증거 확보의 어려움 ····· 15
다. 피의자의 낮은 죄의식 ····· 16
라. 침해금액 산정의 곤란 ····· 16
제3장 우리나라의 제도적 영업비밀 보호체계 방향 ····· 17
1. 입법적 개선 방향 ····· 17
가. 규정의 단일화 ····· 17
나. 제18조 1항 벌칙 규정의 기준 변경 ····· 18
다. 제판과정에서의 비밀 보장 강화 ····· 18
라. 조정제도 도입 검토 ····· 19
2. 민사적 구제수단 개선 ····· 20
3. 침해행위 입증수단의 다양화 ····· 20
4.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 ····· 21
제4장 결론 ····· 22
참고문헌 ····· 24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과 그에 따른 기술력 강화로 인해 영업비밀의 보호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개선이 뒤따르지 않아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기업들이 적당한 구제수단을 찾지 못하고 혼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러나 영업비밀의 보호만을 강조하여 영업비밀 침해에 강력한 처벌, 특히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에 대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존의 보호체계와 충돌은 없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등, 부정적인 견해도 있으므로 제도 개선에 신중을 가해야 할 것이다.

영업비밀과 관련된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실제 사례를 보면 증거 수집이 곤란하거나 침해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시성이 부족하여 기업의 손해를 회복하기 힘든 경우, 침해에 따른 양형의 불균등성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영업비밀침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수집절차나 재판과정에서 비밀 보장 등 보호제도의 개선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다른 나라에서 운영되는 제도와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입법례를 검토하여 법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된 여러 난점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비교·분석하여 영업비밀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보호체계에 대한 개선사항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영업비밀의 기본 요소

영업비밀에서의 비밀은 절대적 비밀이 아니라 보유자의 관리 아래 있는 영역 외에서는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상대적 비밀을 말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상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의미한다. 우리법상 영업비밀의 정의는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6항에 규정된 내용과 비슷하며, 미국 UTSA[1] 제1조 제4항 1호,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여 각국의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개념상 요소로 언급되는 3가지는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성, 비밀관리성으로 이와 같은 개념요소들은 용어상 다소 차이는 있으나 독일 판례에서 규정한 영업비밀 개념요소와도 유사하다.

영업비밀은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상표권과는 달리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등록과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 있는 발명 내지 창작물을 공개하여 제한된 기간이지만 안정적인 권리보호를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위험하더라도 비밀을 유지하여 그 기간 동안 보호를 꾀할 것이냐는 소유자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2] 반면, 이러한 영업비밀의 성격상, 발명 내지 창작물을 갖지 못한 자, 특히 경쟁사의 경우 불

1) Uniform Trade Secrets Act, 통일영업비밀보호법
2) 「저작권법」, 사법연수원, 2009, 9면.

법적으로라도 그 비밀을 획득하고자 하기 쉽다. 대부분의 지식재산권이 민사적 구제수단과 함께 형사적 대응으로 보호되고 있는 반면, 영업비밀은 주로 형사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일 것이다.

영업비밀에 관한 법체계는 대륙법계인지 아니면 판례법에 기반한 영미법계인지에 따라 다르며, 개별 국가에 따라서도 영업비밀에 대한 특별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보통의 민·형사법으로 보호하고 판례를 통해 영업비밀의 개념이 형성되어 왔는지에 따라 다르다. 그리하여 영업비밀의 정의는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양한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다. 영업비밀과 기업비밀을 구분하는 견해도 있는데 여기서의 기업비밀은 광의로 산업비밀을 말하고 협의로는 영업비밀을 의미한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기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기업의 비밀에 속하는 정보이면 비경제적 반사회적 정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3]

가. 비공지성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

영업비밀로서 보호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이 공개 또는 사용에 의하여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을 것을 요구 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상태란 당해 영업비밀이 간행물 등 매체에 의해 공개되지 않거나 일반 대중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입・열람・복사・대출 등을 통해 영업비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4] 즉, 불특정인이 알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3) 윤선희, 김지영 「영업비밀보호법」, 법문사, 2012, 58면

영업비밀보유자의 비밀정보 관리체제나 방법 등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비밀보유자 이외에 어느 누구도 정보를 알지 못하는 절대적인 비밀이 아니라, 비밀보유자 이외의 자가 당해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경우나 제3자가 우연히 동일한 정보를 획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정보를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여기서 비밀이란 상대적 비밀을 의미한다.

나. 비밀관리성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는 타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보유자 자신이 영업비밀을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가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업비밀 보유자가 주관적으로 비밀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야 하고, 객관적으로 비밀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즉 영업비밀을 보유한 자가 비밀유지를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비밀유지의 의사는 우선 주관적으로 판단할 때 명시되어 있을 필요는 없지만, 관리되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비밀 보유자가 당해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일반적인 종업원이 알고 있을 정도면 족하다. 다만, 비밀 보유자가

4)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어떠한 조치를 취하거나 대안을 마련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객관적인 상황에서는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종업원을 제한적으로 한정하여 접근하게 하는 등 비밀유지를 위한 표준화된 관리 수준이 요구된다. 또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접근하려는 자에게는 영업비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 및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한정된 권리를 부여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즉 취업규칙에 재직 또는 퇴직 시 일정기간동안 비밀 누설하면 안된다는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비밀의 접근이 허용된 자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 또는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할 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의무, 경쟁기업으로의 이직, 경쟁사 창업금지 등의 조치와 노력이 필요하다.

다. 경제성

영업비밀은 비밀소유자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고 비밀로 소유 또는 관리할 정당한 이익, 즉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독립된 경제적 가치(independent economic value)가 있어야 한다. 경제성의 결과로 영업비밀은 그 보유자에 의해 양도되거나 라이센스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경제성 요건은 미국 UTSA 제1조 제4항의 규정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5] 위에

5) 정호열, 부정경쟁방지법론, 삼지원, 1993, 253면; 한편, UTSA 제1조 제4항은, 「"영업비밀(information)"은 공식(formulas), 패턴(patterns), 편집물(compilations), 프로그램(program), 도안(devices), 방법(methods), 기술 또는 공정(techniques or processes)을 포함하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의미한다. (1) 그 개시 또는 사용에 의해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그리고 정당한 수단에 의해서는 쉽게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이건 잠재적이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신규성, 경제성), (2) 어떤 상황에서 그 비밀을 유지하기에 합리적 노력의 대상인 것(비밀유지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 언급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의 의미에 대하여는, 법 규정상으로는 영업비밀 그 자체가 거래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두 주장이 존재한다. 하나는 영업비밀의 보호요건으로서 독립적 경제적 가치는 원칙적으로 비밀성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그 공개 또는 사용에 의하여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또 정당한 방법으로는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이거나 잠재적이거나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되며,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며, 정보 그 자체가 경제거래의 대상으로 독립적·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주장이고. 다른 주장은 이와 같은 해석은 동조에서 규정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라는 문구의 해석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또한 구별하여 명문화시킬 이유도 없으므로,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처럼 이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유용성' 요건을 통하여 한정해석하면 충분하다는 주장이 있다.[6] 후자의 견해는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론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구나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엄격히 해석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법자의 의도 측면에서 보더라도, 굳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개정된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부정경정방지법은 독립적, 경제적 가치성이라는 경제성 요건을 명기하였고, 당시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규정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자는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형사처벌을 염

6) 현대호, 영업비밀의 보호요건과 구제수단에 관한 법제연구, 법조협회, 2005, 188면.

두에 두고 그 보호요건으로 엄격한 해석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독립적 경제적 가치'의 문언만 고려하여 영업비밀 그 자체가 거래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 가치가 필요하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경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비추어 영업비밀보호의 실효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영업비밀보호의 실효성을 고려해 볼 때 전자의 견해가 보다 합리적인 주장일 것이다..

3. 우리나라의 영업비밀보호 법률 체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영업비밀 보호 관련 법률로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및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 관한 법이 있다. 두개의 법은 보호객체가 다르다는 것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민간 기업의 가치있는 영업비밀을 보호객체로 한다. 따라서 기술과 관련된 정보 뿐만 아니라 마케팅 전략, 고객명단 등 경영상의 정보도 형사처벌의 보호객체가 된다. 반면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 관한 법률은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그 보호객체로 하고 있어 오직 기술상의 정보만 보호객체로 보고 있다.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

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고, 영업비밀 침해의 행위주체에 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영업비밀 침해 행위의 형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서 두 가지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형량을 달리하고 있는데 국외유출범죄에 대한 형량을 가중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 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단 재산상 이득액이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국내에서 사용되는 영업비밀침해에 대하여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재산상 이득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목적범이며 침해하는 비밀의 사용 용도에 따라 미국 경제스파이법의 제1831조, 제1832조와 같이 나누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미수와 예비, 음모 행위를 모두 처벌 규정이 있다는 점이 미국 경제스파이법과 유사하다.

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 관한 법률은 기존 영업비밀보호법인 부정경쟁방지법의 처벌대상이 민간기업의 비밀 누설인 경우에 한정되어있어 공공연구기관

에서의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에는 미흡하다는 논의에서 입법화되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2조에서는 산업기술을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 공고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이 산업기술 유출 행위의 주체는 제한이 없다. 다만 제34조의 비밀유지의무가 부여된 자는 별도로 비밀누설행위의 주체로 처벌받게 된다. 위 법률 제36조에서는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법 14조에서 정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 하도록 규정하며, 그 태양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다.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 관한 법률도 미수와 예비, 음모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제2장 우리나라의 영업비밀침해 사례 및 분석

1. 대우 자동차 사건

우리나라 법원에서 영업비밀 여부가 재판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진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그중 대우 자동차 기술유출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 기술유출 피해기업들이 기술유출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을 살

펴보자고 한다. 이 사건은 대우자동차의 라세티 승용차 엔진 및 섀시 관련 기술을 러시아 자동차 회사가 대우자동차의 전직 연구원들을 통해 유출하여 자신들의 신차 개발에 유용한 사건이다. 먼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범죄 사실을 입수하여 수개월 간 수사 끝에 피의자 2명은 구속기소, 나머지 6명은 불구속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고의 여부에 대하여 쟁점으로 다투어졌고, 2010.10.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중 1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을 선고하였다.[7] 대우 자동차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주범이 구속되고 2주일 뒤인 2009.9.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하여 일부 인용결정이 내려졌다.[8] 그 내용은 러시아 자동차 회사에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가 개발한 특정 승용차용엔진 반제품 모듈 등을 생산 또는 생산의뢰하거나 생산된 제품의 양도, 판매, 대여, 수출 등 일체의 처분행위는 금지된다는 것이었다. 러시아 회사는 2010.1.2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불복되었고 이에 러시아 회사는 즉시 항고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여 가처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후 형사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주범 1명만 항소하였는데, 유무죄는 다투지 아니하고 양형에 대하여만 심리한 끝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범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상고 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9] 이 사건처럼 일반 기업은 증거획득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형사절차가 먼저 진행되어 증거가 어느정도 수집된 후 영업비밀침해 등 가처분 신청을 먼저 제기하고, 생산금지 등 피해기업이 원하는 일정한 목적이 달성되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0. 8. 선고 2009고단3184호 판결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7. 선고 2009카합3457호 결정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4. 15. 선고 2010노1909호 판결

2. A통신회사 광다중화장치 유출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5.6.25. 선고 2013가합15041)

A회사는 정보통신기기의 제조, 판매를 위해 설립된 회사이다. 병은 A회사에서 수입, 국외업체와의 메일 송수신, 국외기술 번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정, 무, 기 ,경은 각각 A회사에서 장비설치, 영업, 사후서비스, 제품인증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병 등은 A회사 입사 당시 직무상 습득한 기술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허락 없이 A회사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종업계 임직원으로 복무하지 않고, 기타 갑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A회사에 제출하였다. A회사에서 퇴사한 병은 자신의 부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A회사와 같은 업종의 B회사를 설립하였고, A회사에서 퇴사한 정, 무, 기, 경은 B회사에 입사하여 과거 A회사에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A회사는 병이 회사를 퇴사한 직후에 B회사를 설립하고 병을 포함한 나머지 정, 무, 기, 경이 B회사에 입사하여 과거 A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취득한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 사용함으로써 A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1)원고회사가 취급한 광다중화장치는 그 내부 구성품을 어떤 사양, 규격으로 어떻게 조합하는지에 따라 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특정 모델이 되는점, 2)원고는 물품을 공급받기로 한 소외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제품 판매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 받았고,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거래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점. 3)원고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품의 프로그램 소스를 제공 받아 별도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제품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및 매뉴얼을 제작한 점. 4)피고들이 원고 회사에서 재직할 당시 이 사건 제품 제작과정에서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한 점. 5)원고회사는 보안관리 및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문서 및 열쇠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원고 회사 제품 및 관련 문서 등을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 회사 직원들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이 사건 제품 관련 자료들을 무단으로 반출한 다음 이를 원고 회사 동종영업을 하고 있는 B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사실, B회사가 피고회사 직원들을 통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납품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또는 라목 소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민법 제760조에 따라 원고에게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이 사건 제품 관련 자료를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위한 조건으로 비밀유지를 위한 노력 정도를 기존의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변경하여 비밀관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1)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제품 판매등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받았다는 점. 2)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각 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였다는 점. 3)퇴직자가 핵심적인 업무에 근무하였고, 퇴직 전·후의 업무가 동일하다는 점. 4)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영업비밀을 관리하고 있던 점. 5)문서 및 열쇠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였던 점. 6)이 사건 제품 정보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던 점을 들어 해당 자료를 영업비밀로 인정하였다.

3. 그 밖의 영업비밀 침해 사례

가. S전자 개발전략 자료 유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6.22. 선고 2011고단1847호 판결)

S전자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중국인인 피고인 A씨가 중국 가전회사로부터 채용 통지를받고, S전자 사무실에서 S전자의 개발전략 등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한 후 몰래 가지고 나와 집에서 해당 자료를 카메라로 촬영하여 파일로 보관하는 등,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취득한 사건으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 온라인게임 실행정보(패킷) 해외 유출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5. 선고 2011고단3762호 판결)

북한 무역회사 총사장 A씨 등으로부터 컴퓨터 온라인 게임 아이템 자동획득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받은 피고인과 상피고인 등 2명이 유명 국내 온라인 게임 개발사인 B사 C사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던 게임캐릭터 조작 및 게임 실행 등과 관련된 패킷정보를 알아내어 게임 아이템 자동획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국 게임이용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 A사 차세대 아몰레드 사업관련 자료 유출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2.3.30. 선고 2011고단5952호 판결)

A사 아몰레드 사업부서 직원인 H피고인이 중국 K공사 본사 전략기획실 직원인 다른 피고인 J의 부탁을 받고 피해업체의 차세대 아몰레드 사업 계획서 자료를 자신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 후 외부로 반출하여 이메일을 통해 중국 K공사로 누설한 혐의로 2명은 구속 기소되고 2명은 불구속 기소된 사안으로 H는 1심에서 징역 2년, J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라. A사 역순환 굴반기, 케이싱 오일레이터 등에 관한 영업비밀 유출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2.9.7. 선고 2011고단 2114호 판결)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취업비자로 A사에 입사하여 기술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A사의 역순환 굴반기, 케이싱 오일레이터 설계도면 등을 중국의 동종업체 입사를 목적으로 USB 메모리에 담아 가지고 나온 후 자신의 노트북에 옮겨 저장하는 방법으로 A사의 영업비밀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마. S사 산적화물선의 해치커버 설계에 관한 영업비밀 유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2.11.15. 선고 2012고단4560호 판결)

피고인들은 S사에 근무하면서 해당 회사에서 퇴직 후 동종 업체를 설립할 목적으로 S사의 영업비밀인 사이드롤링, 폴딩타입 해치커버의 설계도면 등을 USB

메모리를 통해 취득한 후, 퇴사하여 피의회사인 A사에서 해치커버 설계도면 등을 수정하여 A사와 함께 해치커버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중국의 B사에 S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1명이 구속 기소되고 6명이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 등이 선고된 사건이다.

4. 침해범죄 분석

가. 기술유출의 국외 비중이 높아짐

과거 영업비밀 관련 범죄는 이직 시 범행이 주류였던 반면, 최근에는 외국업체와 합작으로 공장 설립을 하는 과정에서나 회사 인수합병을 통한 영업비밀 유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범행수법도 고도화되어 증거수집을 통한 형사처벌은 점차 힘들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영업비밀 침해 사례 중 다수가 중국, 러시아 등 외국과 회사와 관련하여 국내기업의 내부자가 외국기업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다가 적발된 사건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이었다. 즉 우리나라에서 영업비밀 침해는 주로 중국 등 타국이 국내 선도기술 탈취를 목적으로 국내 기업 내부자에게 이익제공, 취업보장 등을 미끼로 영업비밀을 획득하여 동일산업에서 기술적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국외 영업비밀 유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나. 증거 확보의 어려움

컴퓨터 조작 등 전자기기를 통해 영업비밀을 획득 후, 직접 대면 없이 경쟁

사에 영업비밀을 손쉽게 전달 가능하고, 포렌식을 통해서도 자료회복이 불가능한 전자증거의 제거 기법 및 장비가 발달함에 따라 영업비밀 보유 기업에서 체계적인 영업비밀 관리시스템을 운용하지 않는 경우, 영업비밀 유출 등의 범행과 해당 증거인멸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다.

다. 피의자의 낮은 죄의식

영업비밀 침해범죄의 경우 해당 영업비밀에 접근이 가능한 전문 기술보유자 내지 경영상 핵심인력이 범행 주체인 경우가 다수이다. 이들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이유는 연구·개발자나 해당기술 보유자의 경우 영업비밀 보유 기업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면서 당해 기술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연구 또는 관여하였고, 실제로 자신이 해당 기술개발에 기여한 경우가 다수이다. 이러한 영업비밀을 회사에서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기 쉬우며, 이는 곧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낮은 죄의식으로 연결된다.

라 침해금액 산정의 곤란

우리나라는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통신 산업 등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으며 해당 영업비밀을 비합법적으로 유출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단 영업비밀이 유출된 이후에는 유출되기 전으로 원상회복은 불가능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산업보안협회(ASIS)가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 기업의 영업비밀 도난으로 인해 사라진 미국 내 일자리가 600만개에 이르는 것

으로 추정되었다고 한다. 국가 전체 피해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이보다는 적으나, 기업들이 입는 손실은 결코 적지 않다. 통상적으로 기업에서는 해당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었을 경우 해당 기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칠 피해를 산정하는데 미국 법원에서 사용하는 수익접근법을 적용한다. 수익접근법은 해당 기술이 유출되어 상품 개발로 이어져 출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매출감소 예상액으로 시장점유율 기술수명 사이클을 참고해서 산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은 수익접근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영업비밀이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고 재산가치는 영업비밀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영업비밀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나아가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영업비밀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 상당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10]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이 요구하는 정도의 입증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대다수의 기업들이 영업비밀 침해 금액에 대한 입증에 곤란을 겪고 있다.

제3장 우리나라의 제도적 영업비밀 보호체계 방향

1. 입법적 개선 방향

10) 대법원 1999.03.12. 선고 98도4704 판결

가. 규정의 단일화

우리나라의 영업비밀 보호제도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으로 나누어 진다. 이 두 법은 보호객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구별되나 구별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이다. 오히려 한가지 법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법적 혼란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된다. 또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제정에 있어서 부정경쟁방지법과의 조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4조의 2에서 금지청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서도 금지청구를 규정하고 있는 등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 점이 그 것이다.

나. 제18조 1항 벌칙 규정의 기준 변경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국내 영업비밀 침해보다 높은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다국적기업이 국내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지사를 두고 국내기업이 외국계 자본에 인수되는 경우도 있는 상황에서 영업비밀 사용장소를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적합한 기준이 아닐 것이다. 미국 경제스파이법처럼 이익귀속주체를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다. 재판과정에서의 비밀 보장 강화

한미 FTA에 따라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형사절차에 이를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지 아니하여 민사절차와 균형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영업비밀 침해죄 사건에 있어 검찰에 대하여 피해자 그 대리인으로부터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정에서 공개하기 힘들다는 신청이 있는 경우 범위를 정하여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검찰은 해당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에 통지하여야 하고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도 같은 취지의 신청을 할 수 있다.[11] 그러한 결정이 있는 경우 공소장의 낭독도 영업비밀 구성정보 특정사항을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공소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고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 절차를 신설하고 신문절차에서도 신문 또는 진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판 절차에서도 비공개결정이 준수되도록 하고 있다. 우리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증거기록의 분리제출이 실무상 활성화되어 있고, 증거기록을 제출함에 있어 법정에서 증거의 요지와 입증취지를 낭독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재판과정에서 영엉비밀의 비밀 보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조정제도 도입 검토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관련 산업분야 대한 숙련된 지식이 없다면 영업비밀 침해로 인하여 해당 기업이 입는 실제 손해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보통의 법관에게 이와 같은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독일 부정경쟁방지법과 유사하게 상공회의소 등 관련 단체에 영업비밀 침해사건에

11)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23조 제1항

대한 조정소를 설치하여 결과물인 화해에 민사상 조정과 같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부과하는 것이 영업비밀 침해를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법부와의 권한 충돌 문제가 있으므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재판이 아니라 양당사자가 동의하여야 집행력이 발생하는 조정이므로 법률적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민사적 구제수단 개선

영업비밀 관련 사건에서 민사적 구제수단이 어려운 원인은 많은 비용과 권리구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승소하더라도 실효성이 적고, 증거수집이 어려워 권리를 침해당하였음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문제점 외에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의 실효성 강화 필요성이 높은 이유는 영업비밀 침해가 원상회복이 어렵고 침해행위로 인한 기업이 받는 손해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법원에서 사용하는 수익접근법 등 실현가능한 계산방식을 차용하여 손해기업이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침해행위 입증수단의 다양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증거는 가해자 측이 보유하고 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다. 가해자 측이 침해행위의 결과로 획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면 일단 그것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누설된 영업비밀과 동일한 것인지와

그 획득경로를 입증하여야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데 현실적으로 이는 가해자 측의 내부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입증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상 구제를 요청하는 기업들 대부분이 고소단계에서 부터 조기에 압수수색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4의 3에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신청에 의하여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증거수집의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예외규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증거개시절차에서 상대방에 대한 질문 및 문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이나 제3자에 대한 증언녹취, 제3자에 대한 증언녹취에 관계된 문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것과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증거개시절차는 우리와 소송법 체계가 많이 달라 일부라도 받아들이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민사소송 체계가 우리와 유사한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법원은 부정경쟁에 의한 영업상 이익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해 침해행위에 대하여 입증하기 위하여 또는 당해 침해행위에 의한 손해 계산을 하기 위하여 제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한 필요한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원에서 정당한 이유 판단을 위하여 비공개를 조건으로 제시 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까지 두고 있다. 즉 손해액 산정뿐만 아니라 침해행위 자체에 대한 입증을 위한 제출명령 제도 또한 두고 있는 것이다.

4.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

앞서 보았듯이 영업비밀 침해범죄의 경우 해당 영업비밀에 접근이 가능한 전문 기술보유자 내지 경영상 핵심인력이 범행 주체인 경우가 다수이고, 이들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낮은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연구·개발자나 해당기술 보유자의 경우 영업비밀 보유 기업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면서 당해 기술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연구 또는 관여하였고, 실제로 자신이 해당 기술개발에 기여하였기 때문에 영업비밀을 회사에서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발명이 영업비밀이 되어 회사에 많은 수익을 가져왔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러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여 핵심인력의 불만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제4장 결론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과 그에 따른 기술력 강화로 인해 영업비밀의 보호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개선이 뒤따르지 않아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영업비밀의 보호만을 강조하여 영업비밀 침해에 강력한 처벌, 특히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에 대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존의 보호체계와 충돌은 없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등, 부정적인 견해도 있으므로 제도 개선에 신중을 가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현행법령인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집행 사례를 살펴보면 증거수집의 곤란 및 실효성 부족, 손해배상 산정과정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증거수집절차의 개선, 조정제도의 검토, 재판 과정에서의 비

밀 보장 강화 등 입법적 방향에서 보호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비밀유지에 필요한 노력이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되는 등 현실을 반영하는 흐름이 형성되었다고 본다.

기업의 영업비밀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미시적으로는 기술개발이 저해되고 거시적으로는 기업의 파산과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그에 따라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우리 경제를 위해 우선시되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윤선희. 김지영 공저, 영업비밀보호법, 법문사, 2012

송영식. 이상정. 김병일 공저, 지적재산법, 세창출판사, 2008

저작권법, 사법연수원, 2009

정호열, 부정경쟁방지법론, 삼지원, 1993,

현대호, 영업비밀의 보호요건과 구제수단에 관한 법제연구, 법조협회, 2005

박준석,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 저스티스 제114호, 2009

김정덕, 영업비밀의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강태훈, 영업비밀의 보호,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정우식, 영업비밀침해의 법적구제수단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 방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이영희,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나종갑, 영업비밀보호가 과학기술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법제도 연구, 법조 통권 제633호, 2009

신권철,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 노동법연구(2005),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윤선희, 영업비밀에 있어서의 경영상 정보, 창작과 권리39호(2005년 여름호), 2005.

이성호, 勤勞者에 대한 競業禁止約定의 效力과 轉職禁止假處分의 許容 與否, 저스티스 제34권 제4호(2001).